

울산신용보증재단 공고 제2022-1호

울산신용보증재단 기간제 근로자 공개모집 공고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울산신용보증재단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기간제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2022년 2월 8일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울산신용보증재단 기간제 근로자 공개모집

1. 채용구분 : 기간제 근로자 1명

2. 계약기간 : 약 10개월 (2022. 3. 2 ~ 2022. 12. 31)

3. 업무분야

- 남구청 위탁사업 “2022년도 남구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및 환경개선 따뜻한 행복지원 사업” 전담인력

4. 근무지

-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울산광역시 내)

5. 자격요건

가. 학력·전공·연령·성별 제한 없음

나. 지역인재 채용 관련 거주지 제한 미 결격자

다. 재단 「인사규정」 제14조(채용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결격 사유 상세내용은 [별지 1호] 참조

6. 우대사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가점부여

단, 해당 법률 제31조 제3항에 의거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 할 수 없음

7. 근로조건

가. (급여) 월급여 : 2,245,000원 (중식대 포함)

나. (근무시간) 주 5일 근무, 평일 8시간 (9시~18시)

다. (복리후생) 4대 보험 가입

8. 채용절차 및 심사방법

전형 단계	실시일자	평가기준	배점	선발배수	합격자 발표일자	
서류 전형 (서류접수)	'22.02.11(금) ~02.18(금) (낮12시까지)	결격여부만 판단	-	-	'22.02.18(금) 14시 이후	
면접 전형	'22.02.22(화) 오전 10시	아래의 항목을 면접위원이 평가 후 산술평균한 점수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산정	100점	1명 *예비합격자 2명별도	'22.02.23(수)	
		구 분				배점
		기본자질 및 핵심가치				20점
		전문분야지식				30점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20점
창의력·기타발전가능성	30점					
신원조회 이상여부 및 최종합격자 발표			-		'22.02.28(월)	

※ 면접 전형 시간은 재단 사정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9. 채용일정

- 가. 공고기간 : 2022. 02. 08(화) ~ 2022. 02. 18(금)
- 나. 접수기간 : 2022. 02. 11(금) ~ 2022. 02. 18(금) 낮 12시까지
- 다. 면접일자 : 2022. 02. 22(화) 오전 10시 ※시간은 내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라. 신원조회 이상여부 확인 : 2022. 02. 23(수) ~ 2022. 02. 25(금)
- 마. 최종합격자 발표 : 2022. 02. 28(월)
- 바. 근무일자 : 2022. 03. 02(수)

10. 제출방법

- 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www.ulsanshinbo.co.kr)

11. 제출서류

제출 서류 목록	비고
1. 입사지원서	공동
2. 자기소개서	
3. 경력증명서(경력사항 확인용)	
4. 보유자격증 사본	
5.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국가보훈대상자에 한함)	
6. 주소변동사항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졸업증명서(지역인재 확인용)	
7. 신분증	최종합격자 제출
8. 건강검진 결과서	

※ 제출서류는 서류제출 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반드시 가린 후 복사하여 사본을 제출 할 것

12. 문의처

- 울산신용보증재단 경영지원본부 김다정 대리 (☎ 052-283-8363)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3층 울산신용보증재단)

13. 예비합격자 제도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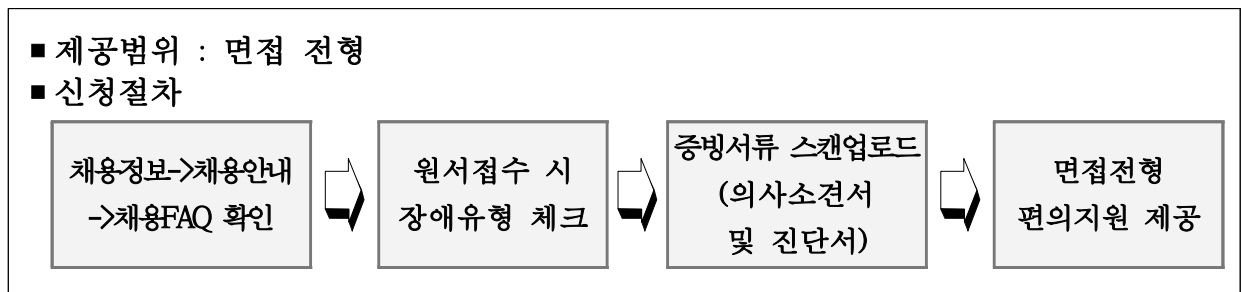
- 가.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응시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예비합격자 제도 시행
- 나.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시 2명을 대상으로 예비합격자 순번 부여하며,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원이 발생하면 차순위자 순으로 입사기회 부여

14. 주의사항

- 가. 지역인재 채용 관련 지원자격 요건 미충족시 ‘탈락’ 처리
- 나. 출신학교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 기재 시 ‘탈락’ 처리
- 다.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교육사항, 자격사항, 경력사항 등 최종 합격 시 증빙
- 라. 허위사실 기재 및 채용비리 사실 확인 즉시 ‘탈락’ 처리 후 민·형사상 조치 예정

15. 지원자 권리 보호제도 안내

- 가. 장애인 지원자에 대한 편의지원 제공



나. 이의 제기 절차

- 근거 :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 조직 지침」에 따라 시험단계별로 불합격자의 이의제기 절차를 운영하여 채용비리에 따른 피해자 구제
- 청구방법 : 재단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 로그인 후 작성 후 제출
- 처리절차



- 피해자 구제방법

피해자 특정 가능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단계로 채용시 기회 부여
피해자 특정 불가	피해자 그룹 대상으로 피해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 채용 절차 실시

16. 기타사항

- 가. 응시자의 부적합 사유 또는 부정합격 확인 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나. 제출서류 중 서류 발급기준일(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미준수자는 보완요청 없이 탈락될 수 있음
- 다. 제출서류가 허위내용 또는 위변조로 판명될 경우 불합격 처분 및 추후 입사 불가
- 라. 응시원서에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라며,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17.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안내사항

- 가. 당 재단은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최종합격자 제외)가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함.
- 나.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우리 재단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 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재단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반환한 것으로 봄

- 다.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당 재단에 제출하여야 함. 채용서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재단이 부담
- 라. 당 재단은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간 채용서류 보관하며, 반환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

18.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관련 안내사항

- 가. 면접시험 당일 기준 코로나19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로 지정된 자는 응시 불가
- 나. 면접시험 지원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시험 당일 출입구에서 발열 및 호흡기 증상체크를 실시하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의심 증상 있으면 응시 제한
* 37.5℃ 이상의 발열 및 기침·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
- 다. 면접시험 전 과정은 면접관·응시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며, 재단 입구에 비치된 손소독제를 통해 손소독 후 시험장소 입실

울 산 신 용 보 증 재 단

결격사유

구분	세부내용
<p>지역인재 채용관련요건 (세부내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공고일까지 계속하여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 ※ 동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22년 1월 1일 이전까지,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3. 울산소재의 학교(초·중·고 또는 대학) 졸업 또는 2022년 2월 졸업예정자
<p>「재단 인사규정」 제14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및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6.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7.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에서 징계사유로 면직된 자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의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